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AED 안내표지판 규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9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AED 안내표지판 규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2

I. 개요

1.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6. 17.
- (3) 회 부 일 : 2025. 6.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AED 안내표지판 규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¹⁾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²⁾)를 설치한 자가 그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및 부착 장소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제5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1)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2)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 -----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의 사항-----.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AED를 설치한 자가 AED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제47조의2제4항)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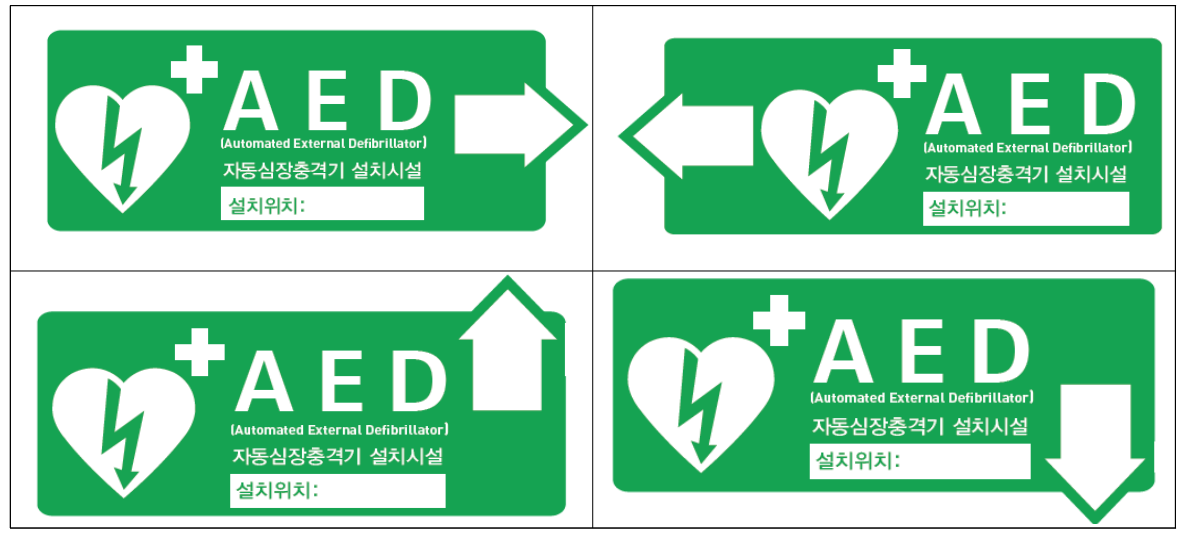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및 부착장소 등(이하 “규격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에서 안내표지판의 예시를 제시하고, 예시 파일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게시하고 있음.

[그림 1] AED 안내표지판 예시



○ 설치장소 유도 시 부착용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제7판, 2024. 5.

□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안내표지판 예시는 국제표준화기구(ISO³⁾) 표준규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⁴)가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한 것임.

- AED에 대해서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붉은색이 화재 및 위험의 의미임을 감안한 것임.

□ 그러나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동 지침에 안내표지판 예시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각 AED 설치자가 개별적으로 인지하여 해당 예시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4)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현재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AED 안내표지판 또한 보건복지부의 예시와 다른 로고를 사용하거나, 녹색이 아닌 붉은색·흰색·검정색을 사용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의 구 명칭인 자동제세동기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임.⁵⁾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AED 안내표지판의 규격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경우 국제적 표준안에 부합하는 통일된 안내표지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혼동을 줄이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전국에 설치된 AED가 약 72,000대⁶⁾로, 현재 부착되어 있는 AED 안내표지판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데에 상당한 인력, 비용 및 시간이 투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과 같이 AED 안내표지판 예시를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되 안내표지판 예시를 AED 의무구비시설의 설치자 또는 AED 기기·AED 안내표지판 판매자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2025. 7. 기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검색 결과

6) 2023년도 말 기준 71,693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구비시설 및 기타 자체 구비시설에 설치된 대수의 총 합계임(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한편, 개정안 시행 시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에 부착된 AED 안내표지판 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칙에서 안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신규설치 또는 교체⁷⁾하는 AED”의 안내표지판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들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 제62조제2항·제3항(2025. 8. 17. 시행예정)⁸⁾에 의거하여 AED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만약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안내표지판의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62조를 개정하여 이와 같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추가해야 할 것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AED 안내표지판의 색상 및 규격은 응급장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국제표준 변경 시 즉시 검토·반영하는 등 조치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지침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7) AED 기기는 내용연수 도과 전에 교체되어야 하며, AED의 내용연수는 장비마다 각기 다르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덧붙여, 일부 AED 의무구비시설의 경우(구급차, 선박 등) 설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 부착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지속 제기되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사·도별 AED 설치 현황
------	----------------

구분	총 설치 대수(대)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 (대)
전 체	71,693	14.0
서울	12,641	13.5
부산	4,090	12.4
대구	2,916	12.3
인천	4,369	14.6
광주	2,019	14.2
대전	1,917	13.3
울산	1,557	14.1
세종	722	18.7
경기	13,824	10.1
강원	2,737	17.9
충북	2,753	17.3
충남	3,629	17.0
전북	2,341	13.3
전남	4,984	27.6
경북	4,397	17.2
경남	4,258	13.1
제주	2,539	37.6

주: 1. 설치 대수는 2023년도 말 기준이며, 인구 수는 해당 연도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수 기준임.
 2. 설치 대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무구비시설 및 기타 의무는 아니나 자체 구비된 시설·장소에 설치된 대수의 총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 10.